

대구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혜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461
----------	------

발의년월일 : 2019. 9. 6.
발 의 의 원 : 김혜정 의원
강민구 의원
김동식 의원
김성태 의원
김지만 의원
이영애 의원
정천락 의원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 관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회의 및 사무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지원 체계를 제도화 하고자 관련규정을 마련함

2. 주요내용

- 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른 대행기관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대행기관의 운영 및 사무처리 등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대행기관으로서 필요한 경비 및 인력 등 협조와 관련된 행정·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 라. 지역의 평화통일 구성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문위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동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사무운영경비 조치 필요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지역회의의 사무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고 대행기관의 사무처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대구광역시를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대구지역회의(이하 “대구지역회의”라 한다)의 회의 소집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대구지역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지역회의 부의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 제4조(인력 등 지원)** ① 시장은 대구지역회의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구지역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대구지역회의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시장은 대구지역회의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문위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 계 법 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사무기구) 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보(補)한다.

③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사무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사무처의 조직 및 직무범위
2.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정원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9조(지역회의 등) ①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시·군·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되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한다.

③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지역회의의 회의 결과의 종합에 관한 사항
2. 지역회의의 조직·운영
3. 그 밖에 지역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1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조(대행기관 등) ① 의장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재외공관으로 한다.

② 의장이 대행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지역회의의 회의 소집과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③ 대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지역회의 또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출신의 부의장 또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위촉) ① 법 제10조제1호 및 제5호의 위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고, 법 제10조제2호 및 제4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을 사무처장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 경우 사무처장은 법 제10조제5호의 인사를 위원으로 제청하기 위해 공모 등 국민이 참여하는 방법을 실시할 수 있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지역의 지도급 인사: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이북5도 대표: 이북5도지사
3. 재외동포 대표: 해당 지역 관할 공관장

4.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 주무관청의 장
- ② 사무처장이 위원의 위촉을 제청하거나 법 제1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을 추천하는 자가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여성인 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 청년(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인 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되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 성별, 세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③ 법 제10조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 사무처장은 미리 위촉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관계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30조(지역협의회)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 및 해외 지역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의장은 협의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둘 이상의 협의회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출신 지역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하고 출신 지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을 준용한다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여론 수렴
 2. 해당 지역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해당 지역의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협력활동
 5. 평화통일에 관한 해외 해당 지역의 공감대 확산 활동
 6.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협의회 회장은 의장이 임명하되,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협의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의회 회장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④ 협의회 회장은 해당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협의회 회의체를 분기별로 1회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해외 협의회 경우에는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개최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⑤ 협의회에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협의회 회의 및 협의회 분과위원회의 조직·운영 및 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⑦ 사무처장은 제1조의2와 제30조제3항에 따른 협의회 회장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협의회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심사위원회(이하 “협의회장 추천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협의회장 추천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다만, 협의회 회장을 보궐 임명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장 추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⑧ 협의회에는 회장을 보좌하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지역 출신의 위원 중에서 협의회 회장이 추천하여 의장이 임명한다.
- ⑨ 협의회는 위원 수 및 지역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회(支會)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회장은 해당 지역 출신의 위원 중에서 협의회 회장이 추천하여 의장이 임명한다.
- ⑩ 지회장은 해당 지역의 제2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회의 회의를 필요시 개최할 수 있으며, 제9항에 따른 지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0조의2(경비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